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가합509067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의 소]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명재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9,892,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60,10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45,640,181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999,273,2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80%는 원고들이, 20%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E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865,532,181원 및 그 중 119,892,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745,640,181원에 대하여는 2020. 7. 24.부터,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1,159,381,223원 및 그 중 160,108,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999,273,223원에 대하여는 2020. 7.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7. 2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D, E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474주를 599,460,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633주를 800,545,000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각 우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우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각 우선주(이하 '이 사건 각 우선주'라 한다)를 발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우선주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투자기업’은 피고 회사, ‘투자자’는 원고들, ‘이해관계인’은 피고 D, E를 말한다).

제3조 (이해관계인)

②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투자기업의 의무 이행을 연대 보증한다.

제21조 (협의 및 동의사항)

투자기업은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하고, 투자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또한 즉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 아래 1호~11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투자기업과 이사 또는 이사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

제31조 (주식매수청구)

① 투자자는 투자기업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4. 투자기업이 제21조에 의한 보고의무, 협의 절차, 동의절차 준수 의무 및 제22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한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투자자의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①항에 의하여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주식이전의 대가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 의한 매수대상 주식에 대한 매수가격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본건 전환

상환우선주식 최초 발행일(다만,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투자 후 유상증자로 소유하게 된 주식의 경우는 동 주식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③항에 의한 매수대금 지급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이 주식매수 대금을 투자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위 주식매수 대금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위약금의 청구)

①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제31조 제①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위약금으로 투자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위약금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자가 지정하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그 지급대금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2019. 8. 16. 당시 이사인 피고 E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 4.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의 이해관계인인 피고 D와 이해관계인인 피고 E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 제21조 제10호에 위반하여 2019년경 대주주와 4억 원의 자금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 제31조에 의거하여 원고들이 각 투자한 우선주 전부(원고 A은 474주, 원고 B는 633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니 통지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피고 회사는 본 통지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위 계약 32조에 따라 각 투자원금의 2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20. 5. 20. 피고 D, E에게, “위 2020. 4. 29.자 내용증명 중 ‘원고 A은 474주, 원고 B는 633주’를 ‘원고 A은 3,320주, 원고 B는 4,433주’로 정정하며, 위 2020. 4. 29.자 내용증명과 본 내용증명의 취지는 원고들이 가진 주식에 대한 전부에 대한 매수청구 및 위약금 등 청구임을 재차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5. 21.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194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주식매매대금 및 위약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2020. 7. 23. 각 주식매매대금으로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들에게 '각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2020. 12. 25.까지 지급하며,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기로 하되, 위 잔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약정은 즉시 취소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의 효력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 회사는 아무 조건 없이 인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이행확약서에서 잔금지급기일로 정한 2020. 12. 25.까지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식매매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여부

가) 위에서 본 기초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에게는 이사인 피고 E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 협의를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처리결과 또한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피고들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인 F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사전에 원고들로부터 서면으로 통지, 협의하였다거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해관계인인 피고 D, E에 대하여 원고들이 인수한 각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D, E는 원고들에게 각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주식매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해관계인인 피고 D, E이고, 피고 회사가 피고 D,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피고 E가 원고 A의 대표이사인 F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고 피고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음에도, 원고들이 투자한 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대여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다거나 허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식매매대금의 범위

가) ① 원고 A은 2015. 7. 21. 피고 회사로부터 599,460,000원에 이 사건 우선주 474주를,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800,545,000원에 이 사건 우선주 633주를 각 인수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20. 4. 29. 피고 D,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 제31조에 의거하여 원고들이 각 투자한 우선주 전부(원고 A은 474주, 원고 B는 633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니 통지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20. 5. 20. 피고 D, E에게, '위 2020. 4. 29.자 내용증명의 취지는 원고들이 가진 주식에 대한 전부에 대한 매수청구 및 위약금 등 청구임을 재차 통보한다는 의미'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0. 5. 21.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위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해관계인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주식이전의 대가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매수가격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최초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D, E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투자한 이 사건 각

우선주 전부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2020. 4. 29.자 내용증명이 피고 D, E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무렵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각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 E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투자원금 599,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우선주 발행일인 2015. 7. 21.부터 위 2020. 4. 29.자 내용증명이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2020. 6. 4.까지 약정이율 연복리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73,299,538원¹⁾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273,025,564원의 합계 872,485,564원을, 원고 B에게 투자원금 800,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20. 6. 4.까지 약정이율 연복리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64,973,833원²⁾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364,607,955원의 합계 1,165,147,955원을 각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나아가 원고들은 위 지급기한 이후인 2020. 7. 23.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A은 130,000,000원을, 원고 B는 170,000,000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위 각 변제금이 위 각 변제금에 대한 2020. 6. 5.부터 2020. 7. 23.까지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원고 A의 지연배상금 3,154,617원, 원고 B의 지연배상금 4,125,268원에 우선 충당되었고, 각 나머지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주식매수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이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위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각 변제금은 각 주식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7. 23.까지 연복리 20%의 이율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각 우선 충당되고 그 각 나머지 금액이 각 주식매매대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라) 위 순서에 따라 각 변제금을 충당하면, 원고 A에 대한 변제금 130,000,000원은 위 주식매매대금 872,485,564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7. 23.까지 연복리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425,639원³⁾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06,574,361원(=130,000,000원-23,425,639원)만 위 주식매매대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그

결과 765,911,203원(=872,485,564원-106,574,361원)이 남게 된다.

그리고 원고 B에 대한 변제금 170,000,000원은 위 주식매매대금 1,165,147,955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7. 23.까지 연복리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1,283,424원4)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38,716,576원(=170,000,000원-31,283,424원)만 위 주식매매대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그 결과 1,026,431,379원(=1,165,147,955원-138,716,576원)이 남게 된다.

마) 따라서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765,911,203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745,640,181원, 원고 B에게 위 1,026,431,379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999,273,2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변제일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약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당시 이사인 피고 E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 협의를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처리결과 또한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 제32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협의 및 동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투자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 지체시 연복리 20%의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들이 2020. 4. 29.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각 신주인수계약의 이해관계인인 D, 이해관계인인 E에게 위약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약금으로 원고 A에게 119,892,000원(= 투자원금 599,460,000원 × 20%), 원고 B에게 160,108,000원(= 투자원금 800,540,000원 × 2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6. 5.부터 약정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배온실, 판사 구현정

1) 2015.7.21.부터 2016.7.20.까지의 이자 47,956,800원(=599,460,000원×0.08)

2016.7.21.부터 2017.7.20.까지의 이자

51,793,344원[=47,956,800원+3,836,544원(=47,956,800원×0.08)]

2017.7.21.부터 2018.7.20.까지의 이자

55,936,811원[=51,793,344원+4,143,467원(=51,793,344원×0.08), 계산의 편의상 원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8.7.21.부터 2019.7.20.까지의 이자

60,411,755원[=55,936,811원+4,474,944원(=55,936,811원×0.08)]

2019.7.21.부터 2020.6.4.까지의 이자

57,200,828원[=65,244,695원{=60,411,755원+4,832,940원(=60,411,755원×0.08)}×320일/365일]

2015.7.21.부터 2020.6.4.까지의 이자

273,299,538원(=47,956,800원+51,793,344원+55,936,811원+60,411,755원+57,200,828원)

2) 2015.7.21.부터 2016.7.20.까지의 이자 64,043,200원(=800,540,000원×0.08)

2016.7.21.부터 2017.7.20.까지의 이자

69,166,656원[=64,043,200원+5,123,456원(=64,043,200원×0.08)]

2017.7.21.부터 2018.7.20.까지의 이자

74,699,988원[=69,166,656원+5,533,332원(=69,166,656원×0.08)]

2018.7.21.부터 2019.7.20.까지의 이자

80,675,987원[=74,699,988원+5,975,999원(=74,699,988원×0.08)]

2019.7.21.부터 2020.6.4.까지의 이자

76,388,002원[=87,130,065원{=80,675,987원+6,454,078원(=80,675,987원×0.08)}×320일/365일]

2015.7.21.부터 2020.6.4.까지의 이자

364,973,833원(=64,043,200원+69,166,656원+74,699,988원+80,675,987원+76,388,002원)

3) 872,485,564원×0.2×49일/365일

4) 1,165,147,955원×0.2×49일/365일